#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70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남인순·권칠승·김민석

김병주 · 김성주 · 김철민

맹성규 · 민형배 · 서영석

신현영 · 양경숙 · 윤준병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를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	
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기준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u>다</u> . <u>&lt;단서 신설&gt;</u>	추가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
	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